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집단급식소 조리사·영양사 직무상 준수사항 신설 등〉

■ 김예지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282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집단급식소 조리사 · 영양사 직무상 준수사항 신설 등	2

I. 개요

1.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28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4. 13.
- (3) 회 부 일 : 2026. 4. 1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현행법 제96조는 처벌을 위한 판단기준에 관한 구체적이고 유용한 지침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므로 위헌이라는 선고(2019헌바141)를 하였음.

이에 위헌 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그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3항 및 제52조제3항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집단급식소 조리사·영양사 직무상 준수사항 신설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식품위생법」 제96조 중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한 조항인 「식품위생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¹⁾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집단급식소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상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준수사항 위반 시 행위 유형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3항, 제52조제3항, 제96조, 제101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51조(조리사) ①·② (생략) <u><신설></u>	제51조(조리사)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u> <u>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사용·조리하지 말 것</u> <u>2. 주방에서 사용하는 기구는 살</u>

1) 2019헌바141, 헌재 2023. 3. 23.

제52조(영양사) ①·② (생략)

<신설>

- 균 또는 소독한 것을 사용할 것
3.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필요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52조(영양사)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매 급식마다 집단급식소의 식단을 작성하고, 식단에 따라 조리된 식품의 안전성·품질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식을 실시하며, 배식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것
 2. 식재료 등 구매식품의 위생상태, 보관온도 준수 여부 등을 검수하는 등 구매식품을 관리할 것
 3. 집단급식소의 식단, 식수인원, 위생상태 점검현황 등이 포함된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작성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할 것
 4.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식품위생교육 일자·내용과 참석자 등을 기록하고 이를 기록한 날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u><신설></u> <u><신설></u> 2. ~ 4. (생략)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략) <u><신설></u> <u><신설></u>	<u>부터 1년간 보관할 것</u> 5.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필요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6조(벌칙) 제51조제1항 또는 제52조제1항을----- ----- ----- -----. 제101조(과태료) ① -----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51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u> <u>1의3. 제52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u>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제51조제3항제3호를 위반한 자</u> <u>5의3. 제52조제3항제3호·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자</u>
---	---

6. (생략)	6.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1조제3항 또는 제5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함.

나. 검토의견

- 「식품위생법」 제51조 및 제52조는 집단급식소 운영자 등으로 하여금 조리사 및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면서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수행하는 직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96조에서는 제51조 및 제5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식품위생법」

제51조(조리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 3. (생략)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식재료의 전(前)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을 말한다]
2.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3.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4.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제52조(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 3. (생략)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2023년 3월 헌법재판소는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미수행 처벌사건²⁾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제96조 중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한 조항인 「식품위생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위헌결정하였음.

□ 헌법재판소는 “제96조 처벌조항은 그 구성요건이 불명확하거나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관계로 어떠한 것이 범죄인가를 법제정기관인 입법자가 법률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법운영 당국이 재량으로 정하는 결과가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거나,

제52조제2항 직무수행조항에서 규정한 직업상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행위 일체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집단급식소 이용자의 영양, 위생 및 안전에 위험을 미칠 가능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경우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음³⁾.

□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각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사항을 준수하지

2) 2019헌바141, 헌재 2023. 3. 23.

3) 소수의견으로 「식품위생법」의 규정내용과 입법목적 및 처벌조항의 보호법익을 고려하면, 처벌조항은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행위 일체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급식소의 위생과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처벌대상을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처벌조항은 벌금형과 징역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법관의 양형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발생하는 위해의 중대성과 광범위성에 비추어 볼 때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형사처벌을 택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과 개정안에 따른 구성요건별 행정벌 비교 >

현행		개정안		
구성요건	벌칙	구성요건		행정벌
제51조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가능)	조리사 의무 배치	제51조제1항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가능)
		조리사 준수 사항	제51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 위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1조제3항제3호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2조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가능) ※제52조제2항 위반을 처벌하는 부분은 위헌결정	영양사 의무 배치	제52조제1항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가능)
		영양사 준수 사항	제52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 위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2조제3항 제3호, 제4호, 제5호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참고로, 2011년 6월 7일 법률 제10787호 「식품위생법」 제51조 및 제52조는 집단급식소 운영자의 조리사·영양사 의무 배치 조항이었으며, 같은 법 제96조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병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즉, 당초 「식품위생법」 제96조는 조리사·영양사 ‘미배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벌칙 조항이었음.
- 그런데, 2011년 6월 7일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조리사·영양사의 ‘직무 범위’ 규정(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이 신설되었음에도 벌칙 조항인 제96조는 이에 맞추어 정비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른 것으로 보임.

식품위생법 [법률 제10310호, 2010. 5. 25., 타법개정]	식품위생법 [법률 제10787호, 2011. 6. 7., 일부개정]
제51조(조리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u><신 설></u>	제51조(조리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u>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u> 1. <u>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u> [식재료의 전(前)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을 말한다] 2. <u>구매식품의 검수 지원</u> 3. <u>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u> 4. <u>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u>
제52조(영양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u><신 설></u>	제52조(영양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u>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u> 1. <u>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u> 2. <u>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u> 3. <u>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u> 4. <u>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u> 5. <u>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u>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u>< 좌 동 ></u>

□ 개정안에 따른 집단급식소 조리사·영양사의 직무상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제재 수위는 집단급식의 공익적 중요성과 해당 의무를 통하여 예방하려는 위해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안 제51조제3항(조리사 준수사항) 및 안 제52조제3항(영양사 준수사항) 위반 시 안 제10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바, 이는 국민에게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침익적 처분임.

따라서, 행정질서벌이라 하더라도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수범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개정안의 일부 준수사항은 의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이행기준이 모호한 문제가 있음.

예를 들어, 안 제51조제3항제2호(주방에서 사용하는 기구는 살균·소독한 것을 사용할 것)의 경우, 조리 직전에 매번 해야 하는지 또는 작업 종료 후 하루에 한 번만 해도 되는지 등 이행 시점과 횟수의 기준이 불분명함.

또한, 안 제52조제3항제1호(~배식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것) 및 제2호(~구매식품을 관리할 것) 역시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이행해야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는지 구체적 판단기준이 결여되어 있음.

이처럼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단속 권한을 가진 행정청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과태료 제재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벌의 기준이 되는 준수사항의 내용을 법률에 구체화하여 명확성을 높이거나, 법률에는 준수사항의 대강(大綱)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약사법」에서는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에 대하여 의약품등의 제조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등 총리령⁴⁾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되, 총리령에서 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공유주방 위생관리책임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및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경우에도 직무수행조항과 별도로 직무수행내역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도록

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제조소의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곤충 등의 침입, 교차오염 또는 외부로부터의 오염 등을 방지할 것
2. 종업원의 보건위생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등의 생산을 위한 교육·감독에 주력할 것
3.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등에 따라 정확히 제조할 것
4. 작업소(「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작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두어서는 안 되며, 작업소에서 국민보건에 유해한 물질이 유출되거나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철저히 하고, 제조단위별로 제조관리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여 갖추어야 하며, 이를 제조일부터 3년 이상 보존할 것
6. 제조과정 중 유기용매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유기용매의 종류와 규격, 사용 목적, 사용량, 잔류량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전문인력에 대한 의무사항 및 제재 입법례⁵⁾ >

구분	의무사항	벌칙/과태료	근거규정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제조관리자는 의약품등의 제조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품질 관리 및 제조 시설 관리, 그 밖에 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에 관하여 <u>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u>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약사법」 제37조, 제95조
공유주방 위생관리책임자	위생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내역 등을 <u>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u>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식품위생법」 제41조의2, 제101조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품질관리인은 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내역 등을 <u>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u>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강기능식품 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7조
맞춤형건강기능 식품관리사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는 제2항에 따른 <u>직무 수행내역 등을 기록·보관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u>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강기능식품 에 관한 법률」 제12의3, 제47조

□ 둘째, 안 제51조제3항제1호는 조리사 준수사항으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사용·조리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안 제101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4조는 누구든지 위해식품등을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8조제3항에서는 집단급식소에 관하여 제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5) 구체적인 조문은 [참고 2] 23p. 참조

아울러, 현행법 제94조제1항제1호7)에서 이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미 현행법상 강력한 형벌로 규율하고 있는 위해식품등의 사용·조리 행위에 대하여 이보다 가벼운 행정질서벌(과태료)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중복 규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셋째, 안 제51조제3항제3호 및 제52조제3항제5호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준수사항으로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필요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각각 규정하고, 위반 시 안 제101조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처럼 구체적인 기준이나 제한의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없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총리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

6)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제88조(집단급식소) ③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제22조, 제37조제7항·제9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7)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법률에 위임할 내용의 구체적 범위를 예시하거나 제한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넷째**, 현재 집단급식소 내 식중독 등 중대한 위생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책임 주체별로 다양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선 행정적 책임으로,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직무상 책임이 있는 조리사는 면허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됨.⁸⁾

8) 「식품위생법」

제80조(면허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조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조리사가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56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4.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5. 업무정지기간 중에 조리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8조(집단급식소) ②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 11. (생략)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위반 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퍼. 법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집단급식소(법 제86조제2항 및 이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제4호	500	750	1000

또한,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 처분이 3회 이상 누적되면 면허가 취소됨.⁹⁾

< 식중독 등 중대한 위생사고 발생 시 제재규정 >

구 분	근거 규정	처분 형태	처분 내용
설치·운영자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제101조	행정벌(과태료)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 (1천만 원 이하)
조리사	「식품위생법」 제80조	행정처분(면허)	면허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제21조	행정처분(면허)	6개월 이내 면허정지, 3회 이상 누적 시 면허 취소

□ 이와 함께 인명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도 엄격하여, 「형법」 제268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위반 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3.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법 제80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면허취소

9) 「국민영양관리법」

제21조(면허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면허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양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3회 이상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영양사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2.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경우

③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5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위반 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3. 영양사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1호	면허정지 1개월	면허정지 2개월	면허취소

조¹⁰⁾에 따라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참고로, 집단급식소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상 준수기준을 신설하고, 준수기준 위반 시 시정을 명하도록 하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9198호)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바,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다. 관계기관 및 단체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위생법」 제96조 위반 결정을 계기로 벌칙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현행 벌칙을 삭제하더라도 조리사·영양사가 더욱 직무이행에 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제재 장치의 마련은 반드시 필요함.
- 다만, 관련 단체 등의 의견처럼 현장에서는 여러 명의 조리사·영양사가 직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보조인력 등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업무 분장·실제 책임자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처분하게 되는 위반의 내용과 대상을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10)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또한, 「식품위생법」에서 집단급식소의 식품 위생·안전에 대한 책임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있으며, 조리사·영양사의 직무내용(식단작성, 검식 등의 단일 행위) 자체로 책임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따라서, 유사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조리사·영양사의 직무 자체 관리에 대한 명확한 내용만 처분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교육부:

- 헌법재판소(2019헌바141)의 「식품위생법」 제96조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함. 다만,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 외에 개정안과 같이 별도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추가로 규정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제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101조(과태료) 등 다른 조문과의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15개 교육청과 일부 학교(284개교)에서 과도한 규제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법제처:

- 개정안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준수사항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사용·조리하지 말 것’ 부분은 「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1호에서 해당 제4조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재 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개정안에서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필요한 총

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부분(안 제51조제3항제3호 및 제52조제3항제5호)과 관련하여,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위반 시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므로 무엇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총리령으로 위임하더라도 어떤 내용이 위임되는지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대한영양사협회:

- 「식품위생법」 제96조는 집단급식소 운영자의 영양사 미배치에 대한 벌칙 조항으로, 2011년 영양사 직무 조항이 신설될 때 벌칙까지 정비되지 않은 입법 미비사항임. 따라서, 「식품위생법」 제96조는 영양사 미배치에만 벌칙 대상으로 한정되어야 함.
- 또한, 개정안은 집단급식소 영양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제2항을 영양사 배치 기준, 적정 인력 배치 현황, 실제 근무 시간 및 업무 분장과 무관하게 모든 업무를 반드시 영양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으로 강제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장의 인력 운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없으며, 적정 인력 배치가 없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모든 영양사를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전락시키는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킴.
- 개정안은 급식 시설이 있는 모든 집단급식소에 영양사, 조리사가 각각 배치되고 일정 규모 이상 및 2식 이상 급식소 등에 복수 영양사 배치 기준에 대한 법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현장 적용이 가능함.
- 아울러, 영양사가 영양사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영양사 무면허자의 업무금지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 대한

법적 제제 조치가 보완되어야 위헌요소를 제거하고 법 실효성을 달성할 수 있음.

□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 개정안은 영양사의 집단급식소 공동관리에 따른 제반 문제로 인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근거로 하였으나, 집단급식소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간과한 과도한 입법 사례임.
- 안 제51조제3항제1호의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를 조리사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며, 안 제51조제3항제2호의 기구 살균·소독 의무는 단순한 의무 부과를 넘어 “시설관리 주체 또는 영양사”가 필요한 소독 설비와 소모품을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명시하여 조리사 개인의 과실로 몰리는 것을 방지해야 함.
- 또한, 안 제51조제3항제3호의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은 조리사에게 예측하지 못한 추가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포괄적 위임으로, 조리사의 직무 범위 내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영양사와 비교해서 동일한 과태료 부과는 과도함.

□ 대한병원협회:

- 안 제5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는 현행법 제52조제2항 각 호의 영양사 직무를 일정 부분 구체화하였으나, ‘배식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것’, ‘구매식품을 관리할 것’ 등으로 여전히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어떤 경우에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 것인지 불분명하며, 이에 따라 처벌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될 수 있으므로 준수사항은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병원이 급식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급식업무는 위탁업체가 고용

한 영양사가 수행하고, 병원 소속 영양사는 임상영양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데, 실제 급식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병원 소속 영양사가 개정안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병원 영양사들의 많은 우려가 있는 상황임.

- 그러므로, 병원이 급식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가 준수사항을 지키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한국식자재유통협회:

- 「식품위생법」 제51조 및 제52조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수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준수사항을 신설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행정처분을 위해 해당 항목을 신설하여 지정된 업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도 오해될 수 있음.
-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 증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에 법적 제재를 위해 직무에 대한 규범을 정하기보다는 영양사, 조리사의 교육을 지원하고 기업이 위생관리를 잘하여 식중독 등 위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증사업이나 위생관리 지원방법에 대해 보완하는 것이 법 취지에 적절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93

【참고 1】 집단급식소 조리사·영양사 현황

□ **집단급식소 유형**(「식품위생법」 제2조)

- ① 기숙사
- ②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③ 병원
-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 ⑤ 산업체
-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⑦ 그 밖의 후생기관 등

□ **집단급식소 업체별 영양사 및 조리사 고용현황** (2026. 8. 31. 기준)

(단위: 명)

구분	기숙사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사회복지 시설	산업체	공공 기관	기타 (수련원, 학원 등)	총계
개소	175	25,140	4,060	3,701	9,763	1,917	955	45,711
조리사**	237	34,149	7,525	3,987	7,154	2,436	999	56,487
영양사**	334	38,831*	8,126	4,624	11,160	3,442	1,189	67,706

* 1개 집단급식소에 다수의 조리사 및 영양사가 근무 중임.

□ 개별법에 따른 영양사·조리사 규정

구 분		관련 법령	배치 기준	
① 기숙사		규정 없음		
② 학교, 유치원	「학교급식법」	영양교사	모든 유치원·초·중·고등학교 ※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 제외	
		조리사	모든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영양사	100명 이상 모든 어린이집	
		조리사	규정 없음 ※ 조리원: 40명 이상 시설당 1명(80명 초과 시마다 1명 추가)	
③ 병원	「의료법」	영양사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당 1명 이상	
		조리사	규정 없음	
④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법」 (노인요양시설)	영양사	1명(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조리사	규정 없음 ※ 조리원: 입소자 30명 이상(1명) 등	
	「장애인복지법」	영양사	1명 이상(시설거주자가 50명 이상인 시설)	
		조리사	규정 없음 ※ 조리원: 시설당 1명(시설거주자가 50명 이상인 시설의 경우 50명 초과 시마다 1명 추가)	
	「아동복지법」	영양사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1명 (아동 5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 등 시설별 기준 정함	
		조리사	규정 없음 ※ 조리원: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1명(30명 초과 시 1명 추가), 각 시설별 기준 정함	
	「사회복지사업법」	영양사, 조리사(원)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겸직하여 운영 가능	
	⑤ 산업체		규정 없음	
⑥ 공공기관		규정 없음		
⑦ 그 밖의 후생기관 등	산후조리원	「모자보건법」	영양사	1회 30명 이상의 임산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1명
			조리사	규정 없음 ※ 조리원: 1명
	학원 청소년수련원 등	규정 없음		

【참고 2】

「약사법」상 제조관리자, 「식품위생법」상 위생관리책임자 등 입법례

「약사법」

제36조(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①의약품등 제조업자(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제조하는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제외한다)는 그 제조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數)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고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물학적 제제를 제조하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의사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에게 그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의무) ① 제조관리자는 의약품등의 제조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품질 관리 및 제조 시설 관리, 그 밖에 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95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의2. 제37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의무 또는 생산 관리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식품위생법」

제41조의2(위생관리책임자) 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위생관리책임자(이하 “위생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가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생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내역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10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4. 제4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내역 등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관한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2조(품질관리인)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인(이하 “품질관리인”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갖추고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품질관리인은 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내역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의3(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

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가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자격을 갖추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는 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내역 등을 기록·보관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의2.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내역 등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관한 자

5의4. 제12조의3제7항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